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44
------	------

발의일자 : 2022. 10. 7.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아동 ombudsman 제도의 실질적 시책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친화 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ombudsman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아동 ombudsman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정비
(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신설(제6항, 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10. 11. ~ 2022. 10. 17.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 ombuds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아동 권리침해 구제 등”을 “아동 ombuds퍼슨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리 침해 예방 및 구제를”을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로 “전담기구 및 아동 ombuds퍼슨을 둘”을 “아동 ombuds퍼슨을 위촉·운영할”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 ombuds퍼슨은 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변호사
2. 아동 관련 학과 교수
3.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 ④ 아동 ombuds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6.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 ⑤ 아동 ombuds퍼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⑥ 아동 ombuds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아동 ombuds퍼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아동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u></p>
<p>제11조의2(<u>아동 권리침해 구제 등</u>) ① <u>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전담 기구 및 아동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u></p> <p>② <u>권리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옴부즈퍼슨에게 아동 권리침해 관련 상담 또는 구제신청(이하 “침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p> <p>③ <u>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침해 구제신청을 위한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u></p>	<p>제11조의2(<u>아동 옴부즈퍼슨 운영 등</u>)</p> <p>①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u>아동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u></p> <p><u><삭제></u></p> <p>③ <u>아동 옴부즈퍼슨은 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u></p> <p><u>1. 아동권리에 관한 변호사</u></p> <p><u>2. 아동 관련 학과 교수</u></p>

④ 제2항에 따른 침해구제신청 접수 시 아동옴부즈퍼슨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구청장은 조사 결과 권리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아동 권리 상담 및 아동 권리침해 구제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④ 아동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태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6.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⑤ 아동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

<신 설>

<신 설>

가 발생하는 경우

⑥ 아동 ombudsman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아동 ombudsman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지원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1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57호, 2019. 10.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① 모든 아동이 성, 인종, 장애,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19.10.10>

- ②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 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및 발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동권리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아동 권리침해 구제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아동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권리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옴부즈퍼슨에게 아동 권리침해 관련 상담 또는 구제신청(이하 “침해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침해구제신청을 위한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침해구제신청 접수 시 아동옴부즈퍼슨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구청장은 조사 결과 권리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아동 권리 상담 및 아동 권리침해 구제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1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홍보
4.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 교육·법조·경찰·체육·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아동·청소년의회 등)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의회(이하 “아동·청소년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
3.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21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제942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7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